

청주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53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5390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239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변론 종결 2022. 3. 18.

판결 선고 2022. 4. 15.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239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2018. 10.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패소한 B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피고 A"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들"을 "피고"로, "이 사건 1근저당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계약"으로, "이 사건 1근저당권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5행부터 같은 면 11행까지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외 회사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15. 피고와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28.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를 경로하였다.』

○ 제3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8행의 "이 사건 1, 2 근저당계약일"을 "이 사건 근저당계약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9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5면 8행의 "인정되고"를 "인정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9행부터 같은 면 10행까지의 "이후 체결된 이 사건 2근저당계약 당시에도 그 상태가 유지됨이 인정된다"를 삭제한다.

○ 제5면 13행의 "이 사건 1, 2근저당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계약"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7면 1행부터 같은 면 2행까지의 "감정된 점," 다음에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외 회사는 2018. 9. 5.경 F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1억 2,000만 원 전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중 1억 원만을 지급한 점(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이 전부 지급되었다), 당심 증인 H은 위 각 계약서의 작성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약서의 작성 및 매매대금 결정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병렬

판사강현호

판사이종인

별지